

< 일 러 두 기 >

- 법령명 : 식품원료 금잔초 및 만수국의 사용제한
- 제정일 : 2024년 7월 11일
- 최종개정일 : -
- 출처 : 대만 식품약품관리서 (방문일 : 2024년 9월 20일)

식품원료 금잔초 및 만수국의 사용제한

1.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의1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.
2. 본 규정에서 정한 금잔초(金盞草) 및 만수국(萬壽菊) 원료의 품종은 *Calendula officinalis*, *Tagetes erecta*, *Tagetes tenuifolia*, *Tagetes minuta*, *Tagetes patula*이다.
3. 전 항의 금잔초 및 만수국 원료는 거름주머니 등 재료로 감싼 후 물에 우려 차로 마시거나 음식 조미용 또는 추출 후 섭취하는 것으로 제한하며, 일일 섭취제한량은 제품 중 루테인(lutein)의 총 함량으로 계산하여 30mg이다.